

구미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3. .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개정이유

2013년 1월 1일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 개정내용의 반영 및 행정의 효율화를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과세특례”를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용어변경(안 제14조 및 제15조)
- 나. 주택분 재산세 일괄부과대상 기준을 5만원 이하에서 1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여 현실에 맞게 운영(안 제16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122조 및 제115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구미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시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 제목 “(과세특례 대상지역의 고시)”를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의 고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의회의”를 “구미시의회의”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과세특례)”를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과세특례”를 “도시지역분”으로 한다.

제16조 중 “5만원”을 “10만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재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u>과세특례 대상지역의 고시</u>) ① 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u>의회의</u> 의결을 얻어 고시하여야 한다.	제14조(<u>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 지역의 고시</u>) ① ----- ----- ----- <u>구미시의회</u> 의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u>과세특례</u>) 법 제112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u>과세특례</u> 의 세율은 1천분의 1.4로 한다.	제15조(<u>재산세 도시지역분</u>) ---- ----- <u>도시지역분</u> ----- -----.
제16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u>5만원</u>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 · 징수한다.	제16조(납기) ----- ----- ----- <u>10만원</u> --- ----- -----.

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3.1.1>

1. ~ 2. 생략

② ~ ③ 생략 <개정 2010.12.27, 2013.1.1>

[제목개정 2013.1.1]

제115조(납기) ①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27, 2013.1.1>

1. ~ 2. 생략

3. 주택: 해당 연도에 부과·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4. ~ 5. 생략

② 생략